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나20165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병기

피고, 피항소인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김범석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3.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0가합594532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F의 피고 C에 대한 2020. 4. 24.자 소멸시효이익 포기행위 및

피고 D, E(이하 통틀어 ‘피고 D 등’이라 한다)에 대한 2020. 4. 27.자 소멸시효이익 포기행위를, 예비적으로 F의 피고 C에 대한 2020. 4. 24.자 230,000,000원의 변제행위 및 피고 D 등에 대한 2020. 4. 27.자 50,000,000원의 변제행위를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131,428,500원, 원고 B에게 98,571,4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등은 원고 A에게 각 28,571,400원, 원고 B에게 각 21,428,5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3면 아래에서 6행, 6면 아래에서 8행 및 아래에서 6행의 각 “이 사건 판결” 부분을 각 “관련 판결”로 수정하고, 다음 제2항에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부분(F의 피고 C에 대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 관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F은 2008. 6.경 피고 C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위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20. 4. 24.경 피고 C에게 위 차용금 중 230,000,000원을 일부변제함으로써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는데, 이러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제1심판결이 F의 피고 C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나, 그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9면 10행부터 아래에서 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먼저 F의 이 사건 제1 송금행위를 통한 피고 C에 대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과 관련하여,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민법 제180조 제2항 참조), F과 피고 C은 1982. 2. 3. 혼인한 부부로서(제1심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 제1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2020. 4. 24.경에도 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F이 피고 C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없는 이상, F이 이 사건 제1 송금행위를 통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 C은 혼인기간 중에는 부부 사이의 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시효정지로 인하여 시효완성이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시효의 진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F과 피고 C 사이의 혼인기간 중에는 F의 피고 C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결국 F이 위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함으로써 피고 C에 대하여 새롭게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F과 피고 C 사이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여지가 없다.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부분(F의 피고들에 대한 변제행위 관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F은 2008. 5.경 피고 D 등으로부터, 2008. 6.경 피고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서, 2018.

1.경까지도 피고 D 등에게 지불각서 내지 각서만을 교부한 채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갑자기 2020. 4. 24.경 피고 C에게, 2020. 4. 27.경 피고 D 등에게 이를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C은 F의 부인, 피고 D 등은 F의 처형으로서 친족관계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은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F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통한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제1심의 변론 결과에 이 법원이 추가로 심리한 내용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인 F이 특히 일부의 채권자인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H조합이 이 사건 압류명령을 위반하여 착오로 F에게 지급한 청산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현종 병가로 서명날인 불능, 판 사, 방웅환, 판사 방웅환, 판사 정윤형